공 개

의안번호	제32호
보 고 연 월 일	2026. 7. 15. (제13차)

보고사항

외환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보고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7. 15.

1. 보고주문

외환건전성규제를 위반한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현황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금융투자업규정」 제3-54조에 따라 외환건전성규제를 위반한 CLSA코리아증권에 대한 제재현황을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26.2월말 및 3월말 기준 CLSA코리아증권의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3개월 외화유동성비율), 잔존만기 7일·1개월 이내의 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7일·1개월 갭비율)이 규제비율을 하회함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제출(’26.5.19.)

4. 참고사항

가. 제13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7.9.) 보고

나.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다. 관계법규 : <붙임 1>

라. 외환건전성규제 제도 : <붙임 2>

마. 관계기관 협의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외환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가. 위반사실

□ **위반내용** : CLSA코리아증권(주)은 '26.1분기 중 외화유동성 규제비율*(7일·1개월 갭비율, 3개월외화유동성비율)을 총 2회 위반(2월말, 3월말)

* 규제비율 기준 : (7일 갭비율) 0% 이상, (1개월 갭비율) △10% 이상, (3개월외화유동성비율) 80% 이상

○ **(위반사유)** '26.2월중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홍콩소재 계열사로부터 4,500만U$을 단기(만기 : 1개월) 차입

* '26.1월중 해당 회사를 통한 외국인 순매도 금액은 약 43억U$으로 확대 ('25.12월 19억U$)

- 동 외화차입금은 원화로 환전되어 외화자산의 변화없이 외화부채가 급증하면서 '26.2월말 외화유동성비율이 규제비율 이하로 하락*

* 2말 외화유동성비율(%) : (7일 갭비율) △53.3, (1개월 갭비율) △53.3, (3개월외화유동성비율) 65.2

- 3월중 외화차입금 상환을 검토하였으나, 결제 자금 부족 등을 우려하여 만기연장(1개월)함에 따라 '26.3월말 외화유동성비율 미준수*

* 3말 외화유동성비율(%) : (7일 갭비율) △55.8, (1개월 갭비율) △55.8, (3개월외화유동성비율) 62.2

나. 제재내용

□ 「금융투자업규정」제3-5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금융회사에 징구('26.5.19)

* (금융투자업규정 §3-52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1년 동안 2회 이하인 경우 →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징구

다. 향후 달성계획

□ CLSA코리아증권은 외화자산 직접 매입('26.4월중 SC은행에서 1,900만U$ 旣매입)을 통해 외화유동성 규제비율 위반 해소*

* 4말 외화유동성비율(단위: %) : (7일 갭비율) 11.5, (1개월 갭비율) 17.0, (3개월외화유동성비율) 102.6

○ 외화유동성 비율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COO 및 준법감시부에 보고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붙임 1>

관 계 법 규

□ 외국환거래법

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① (생 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통화 자산·부채 비율을 정하는 등 외국통화의 조달·운용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건전성 규제)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 략)
2.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의 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구분 및 한도, 그 산정기준이 되는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산정방법, 시기 및 기간을 정할 것
3. (생 략)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비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만기별 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과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및 기준을 정할 것
5. - 9. (생 략)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가. 제21조제2호의 사항(제14조제1호의 기관에 대한 제한은 제외한다)
 나.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3. - 8. (생 략)

③ ~ ⑦ (생 략)

□ 금융투자업규정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0 이상
2.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
 나.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1조의2(적용배제) ① 본점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3-45조부터 제3-46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2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단, 제3-4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할 때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에는 제3-46조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적용한다.

1. 제3-4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 제3-4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5 이내

③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 콜머니 제외)을 같은 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3-4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2. 제3-4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상
3. 제2항제2호 또는 제3-4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내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3-68조에 따른 보고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0 이상
2.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
 나.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제3-54조(제재현황 보고) 금융감독원장은 제3-52조 및 제3-53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8조(외국환업무현황 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황, 그 밖에 제3-46조 및 제3-50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산자료 형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11조의2(외환건전성 등) 증권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등에 대해서는 제3-45조, 제3-46조부터 제3-54조까지 및 제3-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외국환업무취급증권금융회사(「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로 보며, 제3-51조의2제2항에서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은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증권금융회사가 법 제74조에 따라 예수한 투자자예탁금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8-69조(유동성위험관리)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의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 비율
 가. 잔존만기 7일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
 나.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70조(중장기외화대출재원관리)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의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75조(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종합금융회사가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제8-6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4회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매 위반시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가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적용한다.

1. 제8-6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가. 과거 1년 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0 이상
 나. 과거 1년 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5 이상
2. 제8-6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과거 1년 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
 나. 과거 1년 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0 이내
3. 제8-70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③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 콜머니를 제외한다)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1년 이상 신규 외화대출을 동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각 목 또는 제8-6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5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95 이상
2. 제8-6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5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0 이상
3. 제2항제2호 각 목 또는 제8-6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5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0 이내
4. 제2항제3호 또는 제8-70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100분의 85 이상을 상환기간 1년 이상인 외화자금으로 조달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종합금융회사가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제8-77조에 따른 보고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8-76조(제재현황보고) 금융감독원장은 제8-74조 및 제8-75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77조(보고) 종합금융회사는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황,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17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52조제1항의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8조(외국환업무현황 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외국환업무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월 보고 사항 : 다음 달 말일이내
2. 분기 보고 사항 : 매분기 종료 후 말일이내

제6-4조의2(준용규정) ① 규정 제8-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등과 관련하여 제2-12조부터 제2-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업무취급증권금융회사(「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로 보며, 제2-14조의 "별책서식1 제18호"는 "별책서식2 제30호"로 본다.

② 규정 제8-12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표2(제4조 단서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취급증권금융회사"로 본다.

제7-22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종합금융회사는 규정 제8-75조제1항의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23조(보고) ① (생 략)

② 규정 제8-77조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 월 보고 : 다음달 말일이내
2. 분기 보고 :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이내
3. 그 밖의 보고: 사유발생후 10일 이내

<붙임 2>

외화건전성규제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행·종금·금융투자업자·보험사·여전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제비율 적용

○ **외화유동성비율**(은행·종금은 85% 이상)
잔존만기 3개월이내 외화자산 / 외화부채 ≥ 80%

○ **7일 만기불일치비율**(은행은 적용대상 제외)
(잔존만기 7일이내 외화자산－외화부채) / 총외화자산 ≥ 0%

○ **1개월 만기불일치비율**
(잔존만기 1개월이내 외화자산－외화부채) / 총외화자산 ≥ △10%

※ 다만,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및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외화부채 비율이 1%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점검주기는 매월(은행·종금·금융투자업자) 또는 매분기(보험사·여전사)

□ **(제재 기준) 과거 1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제출, **규제비율 상향 적용** 또는 **신규 외화차입 정지** 등 제재 부과

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 시 제재 기준

<table>
<tr><th rowspan="2">과거 1년간
위반횟수</th><th rowspan="2">외화유동성비율
(80% 이상)</th><th colspan="2">만기불일치 비율</th></tr>
<tr><th>7일 갭비율
(0% 이상)</th><th>1개월 갭비율
(△10% 이상)</th></tr>
<tr><td>2회[1] 이하</td><td colspan="3">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제출</td></tr>
<tr><td>3회</td><td>규제비율 상향 적용
(85% 이상)</td><td></td><td>규제비율 상향 적용
(△5% 이상)</td></tr>
<tr><td>4회 이상</td><td colspan="3">일정비율[2] 충족 시까지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 정지</td></tr>
</table>

주: 1) 2회 이상 위반 시부터 보고주기 단축 등 병행 가능
2) 외화유동성비율 : 85%, 7일 갭비율 : 5%, 1개월 갭비율 : △5%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시장분석과	외환감독국
연 락 처	02-2100-2851	02-3145-7920